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나2013015(본소), 2016나2013022(반소) 판결 [위약금
청구 ·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나2013015(본소), 2016나2013022(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51190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6. 10. 5.

판결 선고 2016. 10.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가합511908(본소),
2015가합529695(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3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8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 10.자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실을 알고 2009년경부터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접촉하여 사업추진내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기술력 등이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2013. 3. 28. 피고와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및 업무협약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3. 11. 15.경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성능평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공고를 하였고, 위 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구성한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게 되었다.

3) 원고는 공동연구기관의 구성원(협동연구기관, 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되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원이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공동연구 참여 업체의 신용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가 직접 공동연구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공동연구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부분 중 일부를 원고가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2. 6.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지적재산권)

1.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 관련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함)의 실시권을 상대방에게 허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밖의 어떠한 권리도 이전되지 않는다.
2. 본 '계약제품'에 포함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본 계약 이전부터 원고가 갖고 있던 것으로, 향후 원고와 피고가 함께 개발 진행하여도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지적재산권은 원고가 갖기로 한다.

제6조 (C)

1. 원고가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TLMS)의 High-End 제품 중의 하나로 피고의 Industrial Ruggedized Tablet PC 제품인 C(이하 'C'라 한다)을 개발, 제작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C'를 사용한다.
2. 피고가 'C'를 원고의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TLMS) 제품의 단말기로 제작, 납품할 때 원고와 협의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TLMS)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개발비는 피고가 자체 부담하기로 한다.
3. 'C'가 가격적인 이유 또는 사용자의 요구 사항 등의 이유로 판매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는 협의하여 제2의 'C'를 개발하여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한다.

4. 원고와 협의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TLMS)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개발된 'C'에 한하여 지적재산권은 원고의 것으로 한다.

6.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C'를 판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금액의 2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제품'의 대리 판매 및 납품)

1. '계약제품'의 성공적인 판매를 위하여 피고는 '계약제품'을 원고의 동의를 득한 후에 대리 판매 및 납품, 국가기관 또는 국책사업과 R&D 시범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피고는 'C'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TLMS) 기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고가 아닌 제3의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원고의 동의 없이 판매 또는 납품을 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금액의 2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피고가 '계약제품'을 원고를 대신하여 대리 판매 및 납품할 경우, 피고는 원고와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대리 판매 및 납품에 있어서 신의성실로 임하여야 한다.

4) 원고는 연구원에 피고를 공동연구기관의 구성원으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2014. 1. 3. 연구원과 사이에, 연구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정부출연금 중 510,000,000원을 연구개발비로 지급하고, 피고는 위 정부출연금에 자체 부담금 236,000,000원을 더한 746,000,000원을 연구개발비로 하여 위험물 차량 보급형 단말기 기술을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연구개발 협약에 따라 연구원에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150대(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1대는 피고가 제작·공급하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용 단말기 1대와 아래 견적서 기재 탱크로리용 Sensor Module 시제품 3개, 탱크로리용 Sensor I/F Module 시제품 1개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와 컨테이너용 단말기 150대(이하 'D'이라 한다)를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 견적서 기재 물품을 개발·공급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36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별첨 견적서에 정한 일체의 공급품을 원고가 피고 또는 연구원에 개발/공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공급품이란 연구원이 주관사로 진행하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와 연구원 간에 공급계약 체결된 내용 중 원고가 담당하는 공급내역 부분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

1) 계약의 대상과 범위는 별첨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며 원고가 피고의 동의하에 피고 또는 연구원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공급하기로 한다.

2) 원고가 공급하는 공급품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에 적합해야 하며, 품질(기술적, 성능적)에 연구원이 만족하지 못하면, 원고의 책임하에 연구원의 요구 사항을 맞춰야 한다.

제4조(기간과 추진일정)

1) 공급품의 공급 기간은 2013. 12. 24.부터 2015. 4. 23.까지로 한다.

2) 공급품의 공급 시기는 연구원과 피고 및 원고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3)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급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연구원의 과제 수행 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제반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진다.

제5조 (대금 지불의 조건)

1) 총계약금액 363,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3회로 분리하여 지급한다.

2) 총계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 18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 체결 후 연구원에서 피고로 사업비 입금 후, 원고의 세금계산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총계약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중도금 145,4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계약 체결 후 2개월(2014. 3. 10.) 이내에, 원고의 세금계산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총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잔금 36,3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4. 7.경에 원고가 공급품을 납품하는 시점에 연구원과 피고 그리고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원고의 세금계산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원고와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2) 영업양도의 결의, 폐업 또는 휴업
2.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된 대금 중에서, 피고는 연구원의 선택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의 보수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지급하고, 목적물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자료를 연구원의 소유로 할 수 있다.
3.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에 규정한 총 계약금액 중에서 미지급된 대금에 대하여, 원고는 연구원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 시까지의 보수 금액을 정산하여 피고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지급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발생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제12조 (손해배상)

- 1) 원고와 피고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당한 당사자가 제시, 증명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의 수정,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 간의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1	컨테이너용 단말기 기구물 시제품	E	150	450,000	67,500,000
2	컨테이너용 단말기 Main PCB 시제품	E	150	530,000	79,500,000
3	탱크로리용 Sensor Module 시제품	F	450	390,000	175,500,000
4	탱크로리용 Sensor I/F Module 시제품	G	150	300,000	45,000,000
5	DC				-3,900,000
총계	363,600,000				

<특기사항>

1. 제품 1, 2는 컨테이너 보안장치(Container Security Device)의 일종입니다.
2. 제품 3, 4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Tank Lorry Monitoring System)의 일종입니다.

나. 연구원의 납품 요구 물량의 변경 통지와 원·피고의 협의

- 1) 원고는 2014. 1. 1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18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 2) 연구원은 2014. 3. 10. 피고 등 공동연구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참여업체 및 대상 차량 선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단말기 및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니, 단말기 종류 및 대수와 서버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결정(예산 집행 등)은 차후 공식 통보시까지 연기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3. 10. 피고에게 중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문을 이유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4) 원고는 연구원이 저가의 단말기 개발로 사업추진을 변경하려 하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2014. 4. 25.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가 연구원과 협의하여 당초 납품 요구 물량이 원·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주고, 당초 원고와 피고가 약속한 시제품 생산비 분배기준(원고 3억 6,360만 원 : 피고 1억 2,000만 원)도 변경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4. 30.경 그동안 연구원과의 협의는 원고가 담당하여 진행하였으므로 납품 물량의 협의 또한 원고가 책임지고 조속히 확정하여야 하고 납품 요구 물량의 변동이 생기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분배 비율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5) 연구원의 I 단장은 2014. 5. 22.경 원고의 J 회장과 피고의 K 전무를 만난 자리에서, D의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납품 수량을 150대에서 50대로 줄이고,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Sensor Module의 경우 개발 비용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에서 제외하며,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는 납품 수량을 150대에서 300대로 늘린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D이나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통신사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이동통신사의 통신이 모두 가능하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그 납품 수량에 대해서는 원고가 D 50대와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150대를, 피고가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150대를 각자 개발하여 납품하는

안이 이야기되었으나, 원고가 새로이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150대를 개발하는 것은 추가 비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함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6) 피고는 2014. 5. 23. 그동안의 협의 과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구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과 납품 물량의 변경에 따라 당초 계약서대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300대를 피고가 모두 납품하고 원고는 D 150대를 147,000,000원에 납품하거나(1안)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300대를 피고가 모두 납품하고 D 50대를 150,000,000원에 납품하는 안(2안), 또는 원고와 피고가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를 각각 150대씩 납품하고 D 50대를 원고가 납품하여 피고가 생산비로 360,000,000원 지급받는 안(3안, 단 3안의 경우 원고가 제작하는 단말기는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사양대로 제작하되 납품시기, 설치, 검수 등 모든 것은 원고가 책임지는 조건임) 중에서 선택하였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원고에게 보냈다.

7) 원고의 J 회장은 2014. 5. 30. 피고의 K 전무에게 전화하여 원고와 피고가 납품하는 단말기의 수량을 줄이고 통신사도 원고가 선정할 수 있도록 협상에 성공하면 원고 몫의 생산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한 뒤, 같은 날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의 제안 중 3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보냈다.

8) 원고의 J 회장과 피고의 K 전무는 2015. 5. 30. 저녁에 만나, 통신사 선정권은 원고와 피고에게 줄 수 없지만 단말기의 납품 수량은 20대 정도 감축할 수 있다는 연구원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측에서 개발 중인 단말기와 동일한 제품으로 단말기를 만들어 납품하고자 하면서도 생산비 등에서는 원고의 통신사 선정권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여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였다.

다. 피고의 납품

1) 피고는 연구원의 변경된 물량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가 책임지고 연구원이 요구한 단말기 물량을 납품하겠으니 원고는 최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D과 탱크로리용 센서 등을 납품할 것을 통지하였다.

2) 연구원은 2014. 7.경 피고에게 '위험물 차량 보급형 단말기 개발관련 업무협조조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냈고, 피고는 2014. 8. 1. 원고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연구원과의 이 사건 연구개발 협약에 따른 납품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문건에 기재된 연구원의 사업추진

일정 및 대상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주요 일정

- 1) 단말기 설치계획 수립 : 2014. 7. 29.
- 2) 시범사업용 단말기 기능점검 : 2014. 8. 8.
- 3) 시범사업용 단말기 성능점검 및 보완 : 2014. 8. 10. ~ 8. 15.
- 4) 단말기 설치 교육 : 2014. 8. 15.
- 5) 단말기 장착 : 2014. 8. 16. ~ 8. 29.

주요 기능

1) 단말기형

- 일체형 통합단말기 : 내비게이션, DTG, 블랙박스 기능 등
- 다중접속 : wifi, zigbee, RS-485, RS-232, CAN, OBD 인터페이스 등
- LTE 통신 지원 : 3개 이동통신사 모두 적용 가능

2) 컨테이너형

- 전자봉인 장치의 일반적인 기능 반영
- zigbee를 이용하여 단말기와 통신 가능
- 3개 이동통신사 모두에 적용 가능

3) 피고는 원고가 D 등을 전혀 납품하지 않자, D를 제외하고 피고가 개발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일명 H)만을 2014. 8. 20.부터 2014. 12. 20.까지 사이에 연구원이 지정한 탱크로리 차량 283대에 설치하여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22 내지 27, 4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 이 사건 사업(이 사건 연구개발 협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연구원에 납품할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은, 원고가 2014. 5. 30. 피고의 제안 중 피고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150대를 납품하고, 원고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150대와 D 50대를 360,000,000원에 납품하는 안을 수용함으로써 그와 같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납품할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납품할 제품의 구체적인 사양(specification)을 알려주지 않고 중도금을 지급하지도 않아 원고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고는 원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연구원에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300대를 납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 제6조 제6호 또는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510,000,000원의 2배인 1,020,000,000원에서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181,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38,2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150대를 납품하고, 원고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150대와 D 50대를 360,000,000원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변경된 바가 없고, 원고가 D 50대를 납품하지 않아 피고가 개발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280여대를 연구원에 납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협약이나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납품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H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한 C와 동일한 제품도 아니어서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C를 원고의 동의 없이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연구원에 납품할 물품의 품목 및 수량은, 원고가 2014. 5. 30. 피고의 제안 중 피고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150대를 납품하고, 원고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150대와 D 50대를 360,000,000원에 납품하는 안을 수용함으로써 그와 같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를 연구원과 협의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을 전제로 협의안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그 전제사실에 대한 동의 없이 물품의

품목과 수량만을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안을 해석하여 위 협의안에 동의한 것이고, 그와 같은 의견 차이는 위 협의안을 제시한 날 저녁에 바로 확인이 되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할 물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한 변경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 불이행의 책임 소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 물품의 품목 및 수량에 대한 변경 합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탱크로리용 Sensor Module 시제품 450개, 탱크로리용 Sensor I/F Module 시제품 150개, D 150대의 납품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본 기초사실과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업무협약이나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업무협약이나 계약의 주된 의무도 연구원 추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연구원 추진 사업이 변경될 경우 이 사건 계약의 내용 또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 물품이나 수량이 연구원의 요구로 변경될 경우 원고와 피고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신의 의무나 수익 등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점, ② 연구원은 예산이나 참여 희망업체의 변경 등으로 추진하는 물품의 품목이나 수량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담당하는 개발 품목은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대폭 축소된 반면 피고가 개발하고 있던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는 비록 사양을 축소하여 저렴한 제품으로 생산하여야 하지만 그 수량이 대폭 확대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노하우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사업체로서 다른 기업에 하청을 주어 단말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에 비하여 피고는 단말기를 개발하는 업체로서 원고가 인정하듯이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연구원의 추진 사업이 변경될 경우 원고는 피고가 단말기를 생산하도록 하고 자신의 생산비 몫을 일부 양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에도, 원고는 자신의 몫을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서 이중으로 단말기를 개발하여 납품하겠다고 주장하고, 그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개발 중인 단말기의 상세스펙까지 요구하는 등 피고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만을 제시한 점, ④ 원고가 생산비 몫을 일부 양보하는 전제로 제시한 통신사 선정권은 특허시비 등으로 인하여 연구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으며, 실제 연구원도 이를 거부한 점, ⑤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일정에 맞추어 이행할 수밖에 없는 기한이 정하여진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연구원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지정하는 일정에 맞추지 못할 경우 모든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아가는 점, ⑥ 원고는 위와 같이 연구원과의 관계에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에게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할 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전혀 없으며, 그나마 D를 개발하기 위하여 하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피고가 연구원에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를 납품하기 시작한 이후인 점, ⑦ 연구원의 추진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단말기의 구체적인 스펙이나 사양 등이 정해진 것이 없었고,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능만을 갖추면 되는 것이었으며,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주요 기능에 대한 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점, ⑧ 피고가 비록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생산비의 5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개발시설이나 생산공장을 갖추지 않은 업체로서 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는 이를 수행할 업체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탓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C를 연구원에 판매하거나 C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가진 단말기를 생산하여 납품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 제6조 제6호와 제7조 제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판매 또는 납품 금액의 2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업무협약 제6조 제6호에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C를 판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금액의 2배에 달하는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이 사건 업무협약 제7조 제2호에 "피고는 C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TLMS) 기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거나

원고가 아닌 제3의 회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원고의 동의 없이 판매 또는 납품을 할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금액의 2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정하여져 있음은 앞의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C는 원고와 피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H는 원고와 피고의 합작으로 만들어질 것이 예상된 C와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그 운영체계나 기능도 다르다),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가 연구원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 H를 개발하여 납품한 것이 이 사건 업무협약 제7조 제2호에서 정한 'C가 아닌 다른 제품으로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납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업무협약 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그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181,8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연구원이 요구하는 물품 또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실상 휴업상태의 회사이므로, 이 사건 2015. 4. 3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81,8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 제2호가 당사자 일방의 휴업을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21센츄리시티 관리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의 각 회신결과 및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한국외환은행의 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는 휴면회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채무는 연구원이 요구하는 납품 기일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하는 채무로서 계약의 성질상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기한까지 원고가 자기 해당 부분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가 연구원에게 대부분의 채무를 이행하였으며, 그 후 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의 뜻이 담긴 2015. 4. 30.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반환할 채무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된 대금 중에서, 피고는 연구원의 선택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시까지의 보수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청구하거나 지급하도록 하여, 비록 원고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더라도 그동안의 보수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연구원과 이 사건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원고가 연구원 등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이고, 이와 같은 사정 등이 고려되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이 생산비의 50%로 정해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단말기를 개발하고 연구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와 정산하여야 하는 원고의 보수 금액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인 181,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은 성과보수금을 미리 지급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성과보수금액에 당연 충당되어 전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또는 손해배상의무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이정희

판사이민영